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동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6
----------	------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5일

발 의 자 : 유동균 의원(1명)

찬 성 자 : 신원철, 김태수, 이윤희, 최영수,
유 용, 이순자, 김희걸, 박진형,
박양숙, 박호근, 김혜련, 이명희,
우창윤, 김제리, 김정자(강서),
성중기, 문형주, 김동율, 오승록
의원(19명)

1. 제안이유

현재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나 근거 조문이 불명확함에 따라 기금의 활용용도에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사회투자기금의 용도에 '사회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
(안 제4조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용자 또는 보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1. ~ 6.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u>등에 관한 조례</u> 」에 따른 사회주택 <u>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용자 또는</u> <u>보조</u>
7. (생략)	8. (현행과 같음)